## 주세법 시행규칙

[시행 2024. 5. 17.] [기획재정부령 제1051호, 2024. 3. 22., 일부개정]

기획재정부 (환경에너지세제과) 044-215-4333, 4336

- 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주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계약금액에 따른 주류가격의 산정) ① 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제3조에 따른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(이하 "주류제조자"라 한다)가 「주세법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5조제3항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납품계약을 한 주류의 종류, 수량, 계약기간, 계약상대기관 및 계약금액 등을 적은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납품계약의 금액을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상가격(이하 "통상가격"이라 한다)으로 하기에 적정한지를 확인해야 한다.
  - ③ 주류제조자가 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납품계약의 금액을 통상가격으로 하는 경우에는 「주세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계약상대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.
- 제2조의2(기준판매비율의 결정) 국세청장은 영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을 결정하려면 「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」 제2조의2에 따른 기준판매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3. 12. 14.]

- 제3조(과세표준의 신고)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세과세표 준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3. 3. 20.>
  - 1. 별지 제2호서식의 주류반출명세서 1부
  - 2. 별지 제3호서식의 주류 수불상황표 1부
  - 3. 별지 제4호서식의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1부(경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  - 4. 별지 제5호서식의 환입・폐기 주류 세액공제(환급) 신청서 1부(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  - 5. 별지 제6호서식의 원료용 주류 세액공제 신청서 1부(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  - 6. 별지 제7호서식의 수출・납품용 원료주류 세액공제(환급) 신청서 1부(공제세액이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  - ② 별지 제1호서식의 주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적어야 할 주류의 수량을 계산할 때 주류별·규격별 또는 용량별로 합계하여 산출한 수량에서 10밀리리터 단위 미만의 단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.
- 제4조(면세승인 절차) ①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세승인을 하려는 경우 주류의 종류·용량·수량· 알코올분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·확인해야 한다.
  -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·확인을 하고 난 후 주류의 포장에 봉인을 하거나 날인을 하고 주류의 종류·용량·수량·알코올분과 검사연월일 및 관할 세무서명을 표시한 표지를 붙여야 한다.
  - ③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세승인을 하는 경우 주류의 종류·용량·수량·알코올분, 포장, 용기의 종류 및 개수, 신청인의 주소·성명 또는 명칭, 승인연월일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.
  - 1. 법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류의 경우: 해당 세관장
  - 2. 법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주류의 경우: 해당 납품처
  -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출・납품 주류 면세(승인신청・승인・승인통지)서에 따른다.
  - ⑤ 영 제20조제9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"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출용 면세주류 반출 명세서를 말한다.

- **제5조(납세담보의 제공 등)** ① 관할 세무서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이 2주조연도 이상에 걸치는 경우에는 매년 1월에 담보 또는 보증의 내용과 그 적정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.
  - ②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보증주류를 보존하고 있던 주류제조자가 사망하여 그 면허 등을 상속한 자가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」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담보의 제공이나 주류의 보존을 새로 명해야 한다.
  - ③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보존한 주류의 가액이 미납부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에 상당하는 주류의 보존을 해제할 수 있다.

제6조(서식) 주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2. 3. 18.>

- 1.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환입・폐기 주류 세액공제(환급) 신청서: 별지 제5호서식
- 2.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원료용 주류 세액공제 신청서: 별지 제6호서식
- 3.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수출・납품용 원료주류 세액공제(환급) 신청서: 별지 제7호서식
- 4.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출・납품 주류 면세(승인신청・승인・승인통지)서 및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출용 면세주류 구입(승인신청・승인)서: 별지 제8호서식
- 5. 영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세 미납세 주류 반출 승인(신청・통지)서: 별지 제10호서식
- 6.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주세 미납세 반출 주류 멸실 승인(신청)서: 별지 제11호서식
- 7.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면세주류 멸실 승인(신청)서: 별지 제12호서식
- 8.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류 멸실 증명(신청)서: 별지 제13호서식
- 9. 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세 미납세 주류 반입 신고(증명)서: 별지 제14호서식
- 9의2. 영 제20조제8항에 따른 의약품 제조원료용 주류 면세(승인신청・승인)서: 별지 제14호의2서식
- 10.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출용 면세주류 반입신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출용 면세주류 반입사실 확인 통보서: 별지 제15호서식
- 10의2. 영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른 주정 실수요자(증명신청・증명)서: 별지 제15호의2서식
- 10의3. 영 제22조제4항제2호에 따른 특수용도 주정 면세반출(승인신청・승인・승인통지)서: 별지 제15호의3서식
- 11.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입주류면세 (승인신청・승인)서: 별지 제16호서식
- 12. 영 제30조에 따른 조사원증: 별지 제17호서식

## 부칙 <제1051호,2024. 3. 22.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지 제2호서식 중 "무형문화유산"의 개정부분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